

수원지방법원 2022. 6. 29 선고 2022가단507977 판결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지연

피 고 1. C

2. D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2. 28.부터 2022.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2022. 2. 8.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2. 2. 8. 접수 제576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곽동우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안성시 대 495㎡

2. 경기도 안성시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2층주택

1층 88.26㎡

2층 42.96㎡

[별지]

청 구 원 인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 관계

원고 A과 원고 B은 자매지간이고 피고 C는 원고들의 친할아버지로서, 원고들의 모의 출산문제로 원고들이 지난 2008. 5. 2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피고 C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시기에 피고 C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의 불법행위를 행한 가해자입니다.

2.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

피고 C는 원고 A이 만8세였던 지난 2008. 6.초순경 경기 화성시 E건물 F호 내 피고 C의 방 안에서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원고 A에게 “할머니한테 티 안나게 몰래 이리와, 내가 TV 보여줄게” 라며 원고 A을 불러 원고 A이 피고 C의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피고 C는 원고 A에게 팔배개를 해준 상태에서 “아이고 우리 손녀 이쁘네 다 컸네” 라고 말을 하면서 원고 A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가슴도 많이 컸나 볼까?” 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주무르고, “짹지(어린이 성기)도 잘 있나 볼까” “아이고, 어려서 털은 안 났네” 라고 하며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원고 A의 음부를 주물러 만지면서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C는 2008. 11.말에서 12.초순경 위 불법행위지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 D이 다른 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원고 A을 피고 C의 방 안으로 불러내어 원고 A을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만진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원고 A에게 성기를 내어 보이며 “A아 다른 사람 꼬추 본 적 있어?” “어때? 할아버지 꼬추 크지?” 라고 말하며 원고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후 원고 A의 손을 잡고 피고 C의 성기를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하며 원고 A에게 “이렇게 꼬추를 만지는거야” 라고 하면서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고 C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는 수차례 지속되었고, 이후 2009. 1. 말경에는 위 불법행위지와 같은 장소에서 여느 때와 같이 원고 A을 피고 C의 방으로 불러내어 침대에 눕게 한 후 원고의 가슴과 음부를 주무른 후 원고 A에게 “A아, 너는 손가락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안궁금해?” 라고 하면서 원고 A의 성기에 피고 C의 손가락 한 개를 억지로 집어넣었고 이후 혼잣말로 “어? 들어가네? 그럼 꼬추도 들어가는지 봐볼까? 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원고 A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습니다.

나. 원고 B에 대한 불법행위

피고 C는 원고 A과 자매지간에 있는 원고 B에 대하여서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친족관계에 의한강간 등의 불법행위를 행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C는 원고 B이 만7세였던 지난 2008. 6. 초순경 위 불법행위지와 같은 장소에서 당시 피고 C의 방에만 PC가 있었기에 이를 사용하기 위해 피고 C의 방에 들어간 원고 B에게 “언니 A는 엄마에게 말할 것 같은데 B는 이런 거 말 잘 안하잖아” “이거 비밀이니까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며 원고 B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원고 B의 가슴을 주무르는 행위가 너무 당연하게 지속되자 피고 C는 원고에게 “남자 성기는 본 적 있어? 학교에서도 이런 것은 안 알려주지? 할아버지가 알려줄게” 라고 하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고 B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고 C는 위와 같이 자위에 그치지 않고 점차적으로 원고 B에게 자신의 성기를 원고의 입으로 빨게하거나 원고 B의 손으로 피고 C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여 사정에까지 이르는 등 원고 B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 B에게 “이거 엄마에게 절대 말하면 안 돼. 말하면 할아버지랑 G언니(사촌언니) 등 가족들을 절대 못 보는 거야. 이거 소문나면 B도 결혼도 못 해” 라고 하며 원고 B의 팬티를 벗겨 원고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원고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자신의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원고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후 2009. 2. 말경 원고들의 가족이 피고 C의 주거지에서 나와 이사를 가게 되면서 강간행위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으나, 원고 B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2013년경까지 명절마다 피고 C는 가족들 몰래 원고 B를 따로 불러내어 오천원을 쥐어주면서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추행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3.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은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애착관계를 형성한다는 것과 할아버지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한다는 것의 차이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나이에 피고 C로부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원고들은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고통으로 성인이 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너무나도 끔찍한 기억에

자매끼리 조작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성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고들과 사촌관계에 있는 소외 G가 자신의 아버지(원고들의 큰아버지)로부터 수년간 강간을 당하여 온 사실을 고소하고 가해자인 큰아버지가 구속되자, 원고들 또한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안성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관에서 사건번호 H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 C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자료로서 각 6,000만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 C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6,000만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피고 C의 주거지에서 퇴거한 일자로 일용 산정)인 2009. 2. 28.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에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피고 C와 피고 D 사이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 C는 원고들로부터 지난 2021. 12. 초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지난 2022. 1. 말경 원고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장 및 부동산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할 태세를 보이는 것을 알게 되자 부동산 가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D과 통모하여 지난 2022. 2. 8. 피고 D에게 증여에 의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라고 판시함으로써, 증여계약(사해행위) 당시 손해배상채권의 구체적 액수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채 이후 관련사건에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은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아야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그 구체적인 액수나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09. 2. 28.경부터 손해배상채권으로서 피보전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사해행위의 존재

채무자인 피고 C는 지난 2022. 2. 8.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이던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인 경기도 안성시 I 대 495㎡를 아내인 피고 D에게 증여하였고,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인 경기도 안성시 I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2층주택 1층 88.26㎡ 2층 42.96㎡를 아내인 피고 D에게 증여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2022. 2. 8. 피고 D에게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참조].

그렇다면 피고 C과 그의 아내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2022. 2. 8.자 각 증여계약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채무자 피고 C의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원고들의 채권추심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

위라고 할 것임으로 취소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청구

채권자인 원고들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채권자인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액인 금 120,000,000원을 한도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지만, 원고들은 우선 계산의 편의상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에서 제외하고, 추후 이를 확장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일인의 소유인 대지와 지상건물이 일괄하여 사해행위 목적물로 된 경우에는 비록 그 대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채권을 변제하기 충분하다 하더라도 거래통념상 사해행위 목적이 불가분인 것으로 보아 그 전부의 취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라 할 것이므로, 수익자 피고 D은 채무자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